실수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 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묘지정리가 일상생활의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부인명의로 부인과 같이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묘지를 이장하고 남은 상석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가로 20만원을 준다고 하니 해 볼 의향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A씨는 묘지 정리와 같은 경험이 없었던 터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20만원 중 10만원을 줄테니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고 일용근로자인 B씨도 작업에 참여하였다.

일이 없는 주말에 A씨와 B씨는 현장에 올라가 상석 앞에 구덩이를 깊게 파 상석을 밀어뜨릴 요 양으로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는 B씨가 팠다. 한참을 파서 어른 가슴 높이 만큼 깊어지자 커다란 상석이 움직일까 하고 A씨가 상석에 발을 대고 살짝 밀었는데 그만 이 상석이 구덩이 밑으로 떨어졌고, 이를 피하지 못한 B씨의 정강이뼈가 골절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값 정도 받고 묘지 정리해주다가 발생한 것을 일상생활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A씨가 작업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점이나 상석 묻기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고 작업도 혼자 할 수 없어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인 만큼 이 건 사 고는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 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일상생활이나 직무 수행 등, 보상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해당 약관에서는 달리 규정하 고 있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 피신청인 입장

(1) 일상생활 기인 여부

먼저 지인의 부탁으로 시행한 타인의 묘지 정리가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일상생활의 의미는 업무상 활동 즉. 직무수행 활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조항으로 한 것도 직무수행의 개념을 먼저 확 정한 후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상생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직무' 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또는 법령,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 하더 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직무수행' 이라 함은 통상적인 업무 공간 내이거나 인접되어 있는 장 소에서 반드시 주된 사무일 필요 없이 보조적 업무이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 으로 행위의 내용이 사무 그 자체나 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거나 또는 직전 · 직후로서 불가분적 관계를 모두 충족하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동 기준에 따르면 이 건의 경우도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묘지정리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도 급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묘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일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작업내용 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는 단순한 묘

¹⁾ 약관 규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당해 상품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 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는 '1. 피 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와 '2, 피보험자의 일상생 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 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는 그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 한 배상책임'을 열거하고 있다.

^{2) (}대법원 1989.10.10.선고 89다카2278)

지주변정리와는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일정한 작업을 완성할 임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하는 행위이며 직무와 밀접, 불가분한 행위이거나 그에 수반된 것으로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직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 피보험자 피용인 해당여부

한편 또 다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피용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여부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³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에서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655)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성은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되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을 했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했으며 상석 매장 작업 성격상 피해자의 조력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 신청인 입장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는 사뭇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1) 일상생활 기인 여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라 함은 사람의 의식주의 기본생활을 말하나 이러한 일상생활의 개념을 너무 확대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일상생활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기능, 지식, 기술, 경험이 요구되는 직업 활동이나 운전, 취미 활동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활동만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또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평소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보험자가 평소 수행하던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

³⁾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quot;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quot;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quot;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quot;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quot;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quot;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quot;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 전일에도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주말에 잠깐 일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하여 이를 수락한 것이며 피해자도 우연히 만나 묘지정리를 도운 것이라면 일회적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 으로 신청인이 평소 수행하던 직업이나 직무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로 신청인은 묘지 정리 경험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으며 평소 대리우전업을 영위하 는 외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묘지정리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청인이 지인으로부터 식비와 술값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타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라고 해석한다면 면책사유인 직무 수행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 대되고 오히려 담보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주장은 만약 단순히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무수행중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용돈을 받고 하는 심부름이나 일시적 또는 일회성 아르바이트도 모두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하는 측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란 누구나 평상시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로 보아야 하는데, 사고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농촌에서는 서로 도울 일이 생기면 마을사람들끼리 무상으로 또는 술값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돕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상 석을 정리하는 정도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레슨 지도교사인 피해자 소유의 바이올린 활대(1억원 상당)를 이용하여 연습하던 중 활대가 부러지자 1억원을 지급하고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보험자는 위 사고 가 피보험자인 고등학생이 고가의 바이올린 활을 이용한 전문적인 연주교습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고가의 바이올린 활을 이용한 연주연습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흔한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예술활동 을 하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일상 생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당시부터 예술고등학교 재학중인 바 이올린 전공 학생이었고 사고도 음악대학 입시를 위한 바이올린 교습 중 발생한 것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대학입시를 준비중인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평상시 생활이 아 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자로서는 일 상생활배상책임 담보특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위 특별약관에서 면책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 고 있으므로 면책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어야 함 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어디에도 일상생활의 개념을 정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와 관련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면책사유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사고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4. 위원회의 판단

가. 가족일상생활 기인 여부

분조위는 우선 '일생생활' 이나 '직무'의 의미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였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상생활' 과 '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달리 규정한 것은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이를 구분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 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를 평상시와 구분되는 위기, 비상,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보기는 어렵다고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한 직무 수행여부에 관련해서는 직무를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업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⁵⁾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⁶⁾ 위 서울고법 2011나76169 판결 참조

⁷⁾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26. 선고, 98다 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호)

나. 피보험자의 피용인 인정 여부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신청 인의 주장에 대해서, 분조위는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 근거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5. 맺음말

일상생활은 평상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묘지정리'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처한 입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 인지 아니면 '특별한 일' 인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 금번 분조위의 입장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인용된 예술고등학생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무 수행을 대가성 외에도 계속 또는 반복성 개재 여부로 판단한 것도 흥미롭다. 물론 일회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가의 크기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계약에 준하는 직무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급번 분쟁은 결국 불명확한 약관조항에 대한 다툼으로 보인다. 위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분쟁은 면부책 판단의 경계선상에 있는 건으로 구분을 짓기가 쉽지은 않으나 결국 담보 위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는 넓게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향후 유사 분쟁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상품개발 시 유념할 부분이다.

^{*} 본고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swonlee@fss.or.kr, 또는 02-3145-5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